



2010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·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www.keca.or.kr



2010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·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

「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제7조에 따라 “중소기업”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제11조에 따라 “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” 및 “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년 12월 31일
중 소 기 업 청 장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·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

1. 이 공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유효기간 :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.
3.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-152호(2009. 10. 12)는 이를 폐지한다.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

1. 총 칙

가. 목 적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“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”의 운영에 관한 사항,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“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제품의 분류 및 해석

- ①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.
 1. 제품명(용도, 소재등 포함)
 2.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(8단위) 및 수요처 규격
 3. 세부품명
 4.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(5단위) 단, 제1호 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.
-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류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제2호의 분류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,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.

다.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

-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

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재 또는 특정한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, 이 경우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기타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-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직접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라. 기타의 규정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“레미콘”은 수도권(서울,경기,인천)지역의 경우 수해복구 등 시급한 공사가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현상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적정납품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종로구,마포구,서대문구,중구,용산구,관악구,동작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한다.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“형광등기구”, “가로등기구”, “지동점멸기”로서 LED관련 제품은 각 제품의 연간 총 수요금액의 50%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할 수 있고, 이 경우 입찰방법 · 낙찰자 결정 등 시장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조달청장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.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”에 따라 운영한다.

II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: 196개 제품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명, 정부물품분류번호, 세부품명 및 산업분류번호는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.smba.go.kr, 또는 공공구매정보망(www.smpp.go.kr)에 게재되어 있음

III.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: 120개 품목

-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제품명, 정부물품분류번호, 세부품명 및 산업분류번호는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.smba.go.kr, 또는 공공구매정보망(www.smpp.go.kr)에 게재되어 있음.

☞ www.smba.go.kr → 행정정보 → 법률정보 → 공고 → 2009년도

☞ www.smpp.go.kr → 공지사항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					
번호	제품명	물품분류번호	(세부품명)	산업분류번호	비 고
69	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	24112501	흙골, 판지상자	17210 17222	